

EU,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강화 조치 유예 ('22.2.17~)

對EU 수출시 에틸렌옥사이드(EO)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

* EU의 해당 규정(Regulation(EU) 2021/2246)은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관리 강화 조치로, 한국 수출기업이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,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해야 함

주요 내용

✓ 해당 품목

- 인스턴트 라면(CN코드 1902 30 10)
- 식물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(CN코드 1302, 2106 등)

✓ 검사증명서 제출

- EU 공식증명서 :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 및 발급 요청
- 시험성적서 : EO 검사 가능 국내기관(5개소)에서 발행 가능

* 한국식품과학연구원,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, (주)한국분석기술연구원,
한국기능식품연구원, 한국에스지에스(주)

※ 에틸렌옥사이드(EO) 검사비용은 2022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

- '22. 3월부터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을 통해 신청 접수('22.1.1 이후 검사비 지원 가능)
- 비용증빙, 해당제품 당해연도 수출증빙 등 정산증빙서류 제출필요(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)